

BNK금융그룹

ESG 정책집

반부패 및 뇌물 수수 금지 정책

TOUCH  *Your Heart,* BNL

Contents

반부패 및 뇌물 수수 금지 정책	03
1. 목적	03
2. 적용 범위	03
3. 기본 원칙	03
4. 기타	05

반부패 및 뇌물 수수 금지 정책

Anti-corruption & Anti-Bribery Policy

1. 목적

- BNK금융그룹은 공정하고 청렴한 기업문화의 정착을 통해 이해관계자에게 신뢰받는 금융그룹이 되고자 합니다. 국내외 반부패 관련 법규 및 윤리강령, 그룹 내부통제규정 등을 기반으로 제정된 본 정책의 이행을 통해 윤리경영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.

2. 적용 범위

- 본 정책은 BNK금융그룹 및 전 계열사에 속한 모든 임직원(계약직 및 파트타임 직원 포함)에게 적용됩니다.

3. 기본 원칙

3.1 공정한 업무수행

3.1.1 임직원 책임과 의무

- BNK금융그룹의 임직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공정한 금융질서 확립을 위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령, 감독규정 및 제규정을 정확히 숙지하고 준수합니다.
- BNK금융그룹은 독점이나 반경쟁적 행위 등 건전한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부조리를 배격하여 고객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주주에게 필요한 정보를 차별 없이 공정하게 제공합니다.

3.1.2 공정한 경쟁

- BNK금융그룹은 경쟁사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사용하지 않습니다.
- BNK금융그룹은 자본주의경제의 질서를 존중하고 자유 경쟁의 원칙에 따라 다른 금융회사와 공정하게 경쟁하며, 고객, 주주, 임직원, 협력업체 및 공급업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.

3.1.3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

- BNK금융그룹은 고객 등과의 거래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고객의 금융비용을 가중시키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등 건전한 금융질서를 문란케 하거나, 허위·과장된 표시 및 광고 등에 의한 불건전 영업행위를 하지 않습니다.

3.2 이해관계상충 방지

3.2.1 이해상충행위 금지

- BNK금융그룹의 임직원은 업무 수행 시 개인의 이익보다 회사 또는 고객의 이익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며, 회사 또는 고객과 이해가 상충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.
- BNK금융그룹의 임직원은 업무상 취득한 미공개정보를 이용 또는 누설하여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.
- BNK금융그룹의 임직원은 특정 개인이나 부서의 이익을 위해 허위 또는 과장 보고를 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누락, 은폐, 독점하지 않습니다.

3.2.2 사적이익 추구 금지

- BNK금융그룹의 임직원은 영리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거나 회사의 승인없이 타 업무를 겸직하지 않습니다.
- BNK금융그룹의 임직원은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고객 또는 협력업체에게 부당한 비용을 가중시키거나, 그룹 또는 계열사와 관련된 사업을 알선하지 않습니다.

3.3 금품 및 향응수수 금지 (부패 및 뇌물방지)

- BNK금융그룹의 임직원은 청탁금지법 등 각종 국내·외 법률 및 협약을 준수하고, 공직자 등에게 금품, 향응 출장비, 일자리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습니다.
- BNK금융그룹의 임직원은 고객, 거래처, 직원으로부터 금품이나 향응, 골프접대 또는 이에 상응하는 특혜성 도움을 받지 않으며,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습니다.
- BNK금융그룹의 임직원의 가족, 친·인척 및 지인 등을 통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등을 수령하는 행위는 임직원 본인의 행위로 간주됩니다.

3.4 불공정거래행위 금지

- BNK금융그룹의 임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며,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, 오해를 유발케 하는 등 유가증권 시세조종을 조장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.
- BNK금융그룹은 주주에게 필요한 정보를 관련 법규에 따라 적시에 공평하게 제공하며,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완벽한 회계기록 작성에 만전을 기합니다.

3.5 청렴계약

- BNK금융그룹은 협력업체와 투명하고 공정하게 거래하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협력업체에게 거래조건 강요, 비용 전가, 부당한 영향력 행사, 직간접적인 금품·향응 등을 요구 및 수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.
- BNK금융그룹은 협력업체와 거래시 공고, 입찰, 평가, 계약체결 및 이행의 전 과정에서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합니다.
- BNK금융그룹은 협력업체의 선정과 거래유지 시 그룹 윤리강령의 부합 여부를 고려합니다.

3.6 기부금

- BNK금융그룹은 특정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는 의견을 표명하거나 지원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, 정치자금법을 준수하여 회사 자원으로 집행되는 정치적 기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.
- BNK금융그룹은 기부금과 관련된 주요 기준과 처리 절차 등을 규정하는 기부금 운영 규정을 수립·운영하여 기부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

3.7 훈련 및 교육

- BNK금융그룹은 임직원들에게 정기적인 반부패 및 뇌물수수 금지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
- 반부패 및 뇌물수수 금지 교육의 내용은 관련 사례의 변화 양상에 따라 주기적으로 갱신합니다.

3.8 위반 사항에 대한 처리 절차

3.8.1 위반 사례 접수

- BNK금융그룹은 제보자의 익명을 보장하는 내부고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, 접수된 위반 사항은 신고 채널에 따라 준법 감시인, 혹은 독립된 외부기관에 보고됩니다.
- 불가피하게 금품이나 선물 등을 수수하게 되는 경우, 즉시 반환 후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'금품 선물 등 반환 신고서'를 작성하여 소속 부서의 준법감시 담당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.
- 접수된 제보 내용은 기밀로 유지되어야 하며, 내부고발 등에 대한 보복이 이루어지는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보복을 시행한 임직원에게 징계 조치가 이행됩니다.

3.8.2 시정/징계조치

- BNK금융그룹의 반부패 및 뇌물수수 금지 정책을 위반하는 경우 면직, 감봉, 견책 등의 징계 조치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.
- 기타 사유로 금품, 선물 등을 반환하는 것이 불가한 경우 준법감시 담당자와 부·실·점·장에게 사유를 신고하고, 취득 물품은 사회공헌 목적으로 사용합니다.

4. 기타

4.1 참고자료

- 「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
- 「정치자금법」 등 관련 법령

4.2 제개정 이력

- 2024. 06. 27. 정책 제정 및 시행
- 2025. 08. 18. 정책 개정

TOUCH  *Your Heart,* **BNK**